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176

발의연월일: 2024. 8. 23.

발 의 자:진선미·장철민·박지원

이기헌 · 김한규 · 김문수

서영교 • 백승아 • 조승래

임광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이 가능한 경우 중 하나로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 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우생학적'이라는 용어가 인간의 우열을 따지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우리 헌법가치인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차별을 조장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실질적으로 '우생학적'이라는 용어 없이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라는 표현만으로 인공임신중절수술 적용대상을 규정하는 데 무리가 없으며 일본에서도 '국민우생법'을 '모체보건법'으로 개정하면서 법률에서 '우생'이라는 용어를전부 삭제하여 사용하지 않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서 '우생학적'이라는 용어를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14 조제1항제1호).

법률 제 호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모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을 "유전학 적"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
한계) ① 의사는 다음 각 호의	한계) ①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만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	
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	
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	
다.	.
1.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	1
으로 정하는 <u>우생학적(優生學</u>	<u>유전학적</u>
<u>的)또는 유전학적</u> 정신장애	
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